

주주 귀하

제 21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회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 21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21 년 3 월 30 일 (화) 오전 9 시 30 분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 6 층 회의실
3. 회의 목적 사항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나. 부의안건 :
제 1 호 의안 : 제 2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 2 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 (별첨 1. 정관변경 신규대조표 참조)
제 3 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제 4 호 의안 : 감사선임의 건 (별첨 2. 감사 선임 예정자)
제 5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 6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본점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- 직접 행사 : 신분증
- 간접 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,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 신분증

2021 년 3 월 15 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

주식회사 에빅스젠

대표이사 유 지 창

관 인
생 략

별첨 1) 정관변경 신규대조표

현 재	개정(안)
제 1 장 총 칙	
제 1 조(상호)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에빅스젠 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Avixgen Inc.(약호 AVIXGEN)이라 표기한다.	제 1 조(상호) 이 회사의 상호는 " <u>주식회사 에빅스젠</u> " 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Avixgen Inc.(약호 AVIXGEN)이라 표기한다.
제 2 장 주 식	
제 8 조의 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종류주식은, 그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.	제 8 조의 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⑤ <u>(삭제)</u>
제 9 조의 2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.	제 9 조의 2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<u>등록할 수 있다.</u>
제 10 조의 3(주식매수선택권)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 10 조의 3(주식매수선택권) ⑨ <u>(삭제)</u>
제 10 조의 4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	제 10 조의 4(동등배당) <u>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 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</u>
제 12 조(주주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, 명의개서인을 둘 경우에는 제 13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 12 조(주주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, 명의개서인을 둘 경우에는 <u>제 11 조의</u>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 14 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 14 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⑤ <u>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</u>
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	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⑤ <u>(삭제)</u>

현 재	개정(안)
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.	

제 6 장 감 사

제 42 조(감사의 선임)	제 42 조(감사의 선임)
<p>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 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	<p>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<u>또는 해임</u>한다.</p> <p>② 감사의 선임 <u>또는 해임</u>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 3 항·제 4 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</p>

제 7 장 회 계

제 48 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	제 48 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
<p>①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(사장)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(사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대표이사(사장)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</p>	<p>① <u>대표이사는</u>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<u>대표이사는</u>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<u>대표이사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대표이사는</u>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</p>

현 재	개정(안)
<p>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 447 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대표이사(사장)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대표이사는</u>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 447 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<u>대표이사는</u>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

부 칙

<p>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개정일 2020 년 03 월 27 일 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.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개정일 2020 년 03 월 27 일 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개정일 2021 년 03 월 30 일 부터 시행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첨 2) 감사 선임 예정자

성 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 여부	상근 여부	주요경력(현직포함)
이제현	1960.12.18	3 년	중임	비상근	-동경대학교 박사 -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(주) 대표이사(전) -다인바이오(주) 대표이사(현) -한국바이오협회 감사(현) -건국대학교 겸임교수(현) -과기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단 이사(현)

주주총회 위임장

대리인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본인과의 관계 :

본인은 주식회사 에빅스젠의 주주로서 2021년 3월 30일 개최되는 제 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모든 권리를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1. 의결권 있는 주식수: 주

2. 위임사항 :

1) 보유한株式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결 권리

2) 주권 및 배당금 등 수령에 관한 모든 사항

2021년 03월 일

위임인

주주명 : (인)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별첨 : 인감증명서 1부

주식회사 에빅스젠 귀중